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최 은 하 의원)

의안 번호	21-13
----------	-------

발의년월일 : 2021. 1.

발 의 자 : 최은하,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영미, 김진천
서종수, 이민석, 이필레
한일용

1. 제안이유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추진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안 제4조)
- 라. 통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마. 지원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아. 등록관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1조)
- 자.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1조

4.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입법예고: 2021. 1. 20.~2021. 1. 25. (의견없음)

6.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다.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

2. “예방관리”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며 보건교육을 통한 개인의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

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만성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통계관리 등) 구청장은 만성질환 유병률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강화를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 구청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등록관리) 구청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1억원 미만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미현
연 락 처	02-3153-9993